

PL (Products Liability: 제조물 책임) 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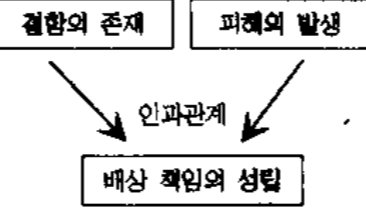
- I. 서론
- II. 본론
 - 1. PL의 개념과 성립 요건
 - (1) 개념
 - (2) 성립요건
 - 2. 결함의 유형과 내용
 - (1) 설계결함
 - (2) 제조결함
 - (3) 표시결함
 - 3. 시행 경위와 범위
 - (1) 시행 배경 및 경위
 - (2) 주요내용과 외국법과의 비교
 - (3) 기본 범위
 - 4. 제조물 책임법의 영향
 - (1) 긍정적 영향
 - (2) 부정적 영향
 - ① 기업이미지 실추
 - ② 손해배상(징벌배상금) 부담
 - ③ 기업생존의 위협
 - 5.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 (1) 안전대책(결함의 최소화)
 - (2) 클레임 대책
 - (3) 소송 대책
 - (4) 보험 확보
- III. 결론

이처럼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과거와 비교하여 제조업자와 책임이 무거워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해서는 뜻밖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산업계와 우려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형편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산업계의 입장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어떤 것인지와 그 시행에 따른 법적 책임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간단하게나마 모색하여 독자들에게 일조하고자 한다.

덧붙여 본 글이 게재되는 지면의 성격상 기술내용 각각마다 일일이 참조 문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밝히지 않고 일괄하여 신기로 한다.

성립이 수월해졌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은 무거워졌다.



2. 결함의 유형과 내용
 제조물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의 결함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제품상에 결함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은 크게 설계결함, 제조결함, 표시결함으로 나누어진다.

(1) 설계결함
 설계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즉, 설계상 안전장치의 미비나 안전기준의 무시 등이 예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미국의 안전규격(UL이나 ANSI 등)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취득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라면 관련되는 각종 안전규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설계결함에 속한다. 또 그 제품이 통상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일반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하기 곤란하다.

(2) 제조결함
 제조결함이란 제조업자와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 중에 작업원의 잘못 등으로 불량 제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함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통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지 않으면 발생을 막기 어렵다.

(3) 표시결함
 표시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그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국내에서 가장 소용하기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특히 주의라벨, 취급설명서(Manual)의 미비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제품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할 요한다.

3. 시행 경위와 범위
(1) 시행 배경 및 경위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배경은 크게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측



면에서 보면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유동과 소비구조가 복잡·다양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 둘째, 소비자 의식 향상 측면으로 보면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익의 함양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법 시행이 요청되어졌다. 셋째, 대외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이미 해외 30여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비난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 넷째, 제조구조의 변화 측면을 생각해보면 제품이 복잡해짐으로써 소비자가 그 제조상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품의 결함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따라서 법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보면 타당하며, 아울러 선진국형 기업문화 정착시키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이며, "국가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권익보호"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경위를 살펴보면 추미에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0호)"으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 주요 내용과 외국법과의 비교
 먼저 우리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총 8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법적용상의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항	구분	주요 내용
1조	목적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2조	정의	제조물(적용대상), 결함(배상책임 성립요건), 제조업자(손해배상책임자) 등
3조	제조물책임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4조	면책사유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 제조물 공급자의 과실,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강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원재료 또는 부품이 완성물 제조업자의 설계,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5조	면책책임	동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생
6조	면책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
7조	소멸시효 등	- 손해배상 청구권: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자를 인정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시효: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경과시
8조	법의 적용	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따름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한편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는 를 말한다. 주요 외국법의 내용 및 법적환경을 우리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영국	EU	일본	미국
PL 책임주체	제조수입판매업자	제조수입판매업자	제조수입판매업자	제조수입판매업자
책임부담 조건	제조결함	제조결함	제조결함	제조결함
결함의 조건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상태	소비자 당면과제 안전성 미비	일반적인 안전성 미비	제조결함 안전성 미비
제조물의 범위	가치나 상이	제조물(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제외)	동산(자동차, 항공기, 선박, 항공기, 선박, 항공기 제외)	제조물 및 가동된 동산
PL법의 근거	총합법칙 없음	(2개의 법령의 적용)	EU의 PL법	PL법
제품의 반환 책임기간	통상적으로 유통 개시 후 10년(단, 가가치 상이)	유통 개시 후 10년	유통 개시 후 10년	유통 개시 후 10년
소송 기한	통상적으로 3년	3년	3년	3년
소송 의식	소송 전의	일반적 소송 전의 (미국 정도는 아님)	일반적으로 소송에 소극적	소송에 비해 강한 소송경향
입금 의무	원고(소비자)만, 제조업자(판매업자) 의무	원 고	원고(단 원고불응행위인정된 상태로 부패 경감)	원고
면책의 제한	인 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배상책임도	제한	불제한	불제한	불제한
소송 비용	평균 (3,000~4,000달러 상이)	프, 스: 무료	프, 스: 정액제임	정액제
변호사 수	8만 명	내부에 비해 다른 국가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음	미국에 비해 상당히 적음	미국에 비해 1/10 이하
변호사 상급비율	있음 (단 제조사 변호사 비율 무효)	있음	있음(단 제조사 변호사 비율 무효)	공식적으로 없음

[제조물책임법 및 법적환경의 국별 비교]

聯興石材—美化您的新天地!
Lianxing Stone—To Beautify Your New Environment

聯興石材有限公司
 Lianxing Stone Co., Ltd.

工廠地址 (Head Office): 廣東省廣州市海珠區南洲工業區
 Nancuo Industrial Park, Guangzhou City, Guangdong Province.
 聯絡電話 (TEL): 0086-598-8062222 8062033
 傳真 (FAX): 0086-598-8062222 8062033
 手機 (Mobile): 0086-13902220773
 電子郵件 (E-mail): lxtstone@163.com
 網址 (Http): // www.lxtstone.com

廣州辦事處 (Guangzhou Office)
 地址 (ADD): 廣州市工業大道南 821 號金華花園 12#18 樓 D 座
 Flat D Floor 18, Building Jinghua Garden No.821 South Industrial Avenue, Guangzhou
 電話 (TEL): 020-84082662
 手機 (Mobile): 139-22433199
 廣州門市部: 廣州市天河區東圃石村 B 區 6-4 號
 電話 (TEL): 020-82322820

※ (사) 한국석재협회의 특별회원사 업체

미래 관광자원의 주축이 될
 새로운 도시환경문화를 창조하는

(주)장등석재

석재전문업체 전문제작

- 화강석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GRANITE BOUNDARY BLOCK)
- 화강석 아광경계석(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
- 화강석 도로분리대, 가로수분경계, (GRANITE CENTER SEPARATION, STREET TREES STONE, TREESPROTECTION HOLE COVER)
- 계단석, 두껍석, 건축석 (GRANITE STAIRS STONE, ORNAMENTAL CAP STONE/ARCHITECTURAL INTERIOR GRANITE)
- 교명석, 플라드, 표지석 등
- 석재중예품 및 가공일절(거문예석)
- 납굴 및 장묘 주문형 제작
- 엠보스톤, 미끄럼방지석
-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670-890
 전북 익산시 달신면 구룡리 979-51
 http://www.hdstone.co.kr
 TEL (063)858-6484~5 FAX (063)858-8473

(주)장등석재

아광도로 경계석 시공현장